

김용현·여인형 등 증인 채택...2월6·11·13일도 재판

현재,尹탄핵심판 23일 광중근·조지호부터 증인신문 시작
김용현 날짜는 재논의...尹측 변론일정 변경 요구는 일축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군 지휘관 등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2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광중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과 조 청장은 오는 23일, 이진우·여인형 사령관 및 홍장원 전 차장은 다음 달 4일 신문할 예정이다. 증인신문 시간은 1인당 90분이 배정됐다.

이들 5명은 국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거나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이들도.

국회 측은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신청한 5명이 모두 채택됐고 필요하면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선포·유지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김 전 장관의 입을 빌려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김 전 장관을 다음 달 6일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그를 첫 번째 순서로 당겨달라고 요구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른 증인들을 신문할 때 김 전 장관과 대질할 수 있도록 함께 불러달라고 현재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문 대행은 "그건 협의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다른 증인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16일 오후 서울 중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청했으나 현재는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날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

정해 6·8차 변론을 다음 달 6일, 11일, 13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열기로 했다. 기존과 같이 주 2회씩 재판하는 일

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변론 일정이 무리하다고 항

의했다. 그러나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했다. 그러나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했다. 그러나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공수처 조사 거부하고 국면 전환 '승부수'

●尹측, 체포적부심청구배경

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 청구

체포 적법성 다투고 구속대비 무대이동 포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격적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승부수를 띄웠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부심 청구는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 공방의 무대를 불리한 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

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에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대부분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그동안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국면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에 앞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에 내란죄가 없고, 내란·외환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관련범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입장에서 체포가 부당함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주도한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거부 명분을 강화하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 조성을 시도하려는 측면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원래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하게 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했고, 첫 영장에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시한 점 등을 이유로 서부지법에 불신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해 향후 다툼의 무대를 중앙지법으로 옮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엄박한 구속영장에도 대비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담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도록 돼 있고 이때 재판관할권은 중앙지법에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재,尹대통령측 탄핵심판 기일변경 불허

"변경할만한 사유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1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재현 헌재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된 뒤 현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급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

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현재에 밝혔는지에 관해 현재는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 역시 참여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4명이다.

조 전 재판관과 정 전 총장은 고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8인회'로 불리는 등 가까운 사이였던 법조인이다. /연합뉴스

공조본, 55경비단 출입허가 공문 논란에 "어떤 강압도 없어"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55경비단 출입 허가 요청 공문과 관련한 진실 공방에 대해 압박이나 강압이 없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지난 14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논란이 벌어졌다.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에 사전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군사기밀법상 보호구역인 한남동 관저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이 공수처와 국수본의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면서 "(경비단장이)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뒤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면 '尹 진술 거부...'서 계속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부터 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하는 형태로 결정을 내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여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오동

윤 공수처장과 우중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천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경호는 구치소 담벼락까지...경호구역 지정시 양측권한 충돌

경호처 경호권-교도관 계호권 안겹치게...혼란 방지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구치소 측이 협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구치소 외부 경호와 경호처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현재 정문 외부 경호는 경호처가,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계호·경호를 맡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함께 구치소에 도착한 경호관들도 주벽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쪽 사무청사 내부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는 구치소의 특성상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도관들의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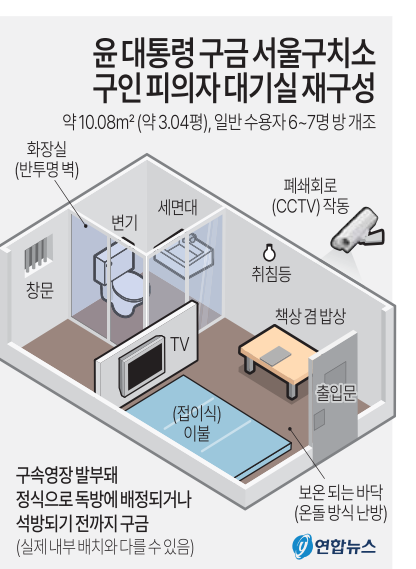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경호처가 구치소 내 검문·검색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보안·계호 시스템에도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교정기관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별도 경호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구치소 측은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놓고 경호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는 방식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체포돼 10시간40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윤 대통령은 현재 구치소내 피의자 대기공간인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고 있다.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은



총 2곳으로 수용동과 분리돼 보안과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다.

모두 비어 있어 특별한 준비 없이 윤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 곳도 비어있는 상태다.

면적은 6·7평으로, 영장심사나 조사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공간이라 다소 넓

은 편이다. 내부에는 이불과 방상, TV가 있고 화장실에는 변기와 샤워기 등이 갖춰져 있다.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CCTV도 설치돼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생활복을 착용하거나 체포 당시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을 수 있다. 다만 허리띠나 넥타이, 휴대전화 등 일부 물품은 반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생활복을 착용하지 않고 체포 당시 입었던 양복 차림을 그대로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잠자리에 들었으나 곧바로 잠들지 못하고 한동안 뒤척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까지는 경호차량에 탑승해 이동했지만, 앞으로는 관례에 따라 조사 등에 출석할 때는 교도관들이 운전하는 호송차에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